

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동의안

(의안번호 제266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09. 01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9. 04.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3. 09. 13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감면대상자

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

3.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 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

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다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와 같다)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4. 기타사항

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- 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
- 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5항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□ 동의안 제출 배경

- 호우피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군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.

□ 검토의견

○ 감면대상의 적정성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은 감면 지원 대상으로 적정함.

○ 감면세목 및 내용

- 2023년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),
-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
- 2023년 재산세 면제

- 본 동의안은 2023. 7.19. 호우피해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피해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되게 지원하도록 함에 따른 조치로써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재난·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음. 적용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